

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관련 시사점: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중심으로*

나희량**

국문초록

음(-)의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는 제로잉(zeroing) 문제는 오랫동안 WTO 분쟁 이슈 중 하나였다. 2013년 12월 시작된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2016년 9월 상소기구가 반덤핑 산정 시 대칭비교 및 비대칭비교 모든 방식에서 제로잉 금지를 판결함으로써 제로잉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 판결에서 상소기구는 반덤핑 산정 시 비패턴거래를 제외(exclusion)할 수 있다고 하여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제로잉 방식을 공식 폐기하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패턴거래 제외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제로잉과 유사한 반덤핑관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미 수출국들에게는 새로운 통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소기구의 제로잉 금지 및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한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반덤핑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미국이 제로잉 적용 대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제로잉, 상소기구, 비패턴거래 제외방식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21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 heeryang@pknu.ac.kr

I. 서론

제로잉(zeroing)의 해석에 대한 문제는 최근까지도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분쟁 이슈 중 하나였다(나수엽 2010; 조영진 2009; 이길원 2007; 성재호·이길원 2006).¹⁾ 특히, 2013년 12월 시작된 한-미 세탁기 분쟁(미국-Washers 분쟁, DS464)²⁾의 제로잉에 대한 상소기구 판결(2016년 9월)은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분쟁은 제로잉 관련 최근의 사안인 동시에 패널, 상소기구 및 이행(compliance) 분쟁 판결까지 종결되어 제로잉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최종적 판단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조영진 2020, 2017; 김상만 2015).³⁾

- 1) 제로잉(zeroing)은 덤핑마진 산정법 중 하나로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인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의 산정 시 활용되는 기법이다. 미국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덤핑관세를 산정을 위한 덤핑마진은 수입국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때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負)의 마진은 마이너스(-)로 산정하지 않고 0(zero)으로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아지도록 산정하는 것을 제로잉이라고 한다. 제로잉의 경우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은 덤핑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반덤핑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제로잉은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으면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산정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 2) 한-미 세탁기 분쟁(DS464)의 개요는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64_e.htm 참조.
- 3) 미국은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기간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판매를 표적덤핑으로 보고, W-T 비교방식 및 제로잉 기법을 활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 9~1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동 조치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2013년 12월 제소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조치 대부분이 WTO 반덤핑협정 위반이지만 표적덤핑의 경우 W-W 및 W-T 비교방식을 결합,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W-W 비교방식으로 산정된 중간 덤핑마진 중에서 음(-)의 마진을 제로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 패널보고서는 2016년 3월 회람되었다. 이에 불복한 한국은 상소하였는데 상소기구는 패널의 기존 판결을 기각하고 비교방식을 결합, 덤핑마진을 산정할 경우에도 제로잉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WTO 판결의 이행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8년 1월 미국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7억 1,100만 달러의 양허정지를 신청했다. 양허정지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제로잉의 ‘반덤핑협정’⁴⁾ 위반 여부는 1995년 WTO 출범 이래 첨예하고 빈번하게 제기된 논쟁 사안이었다. 1999년 EC가 인도産 침대보(bed linen)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 시 제로잉을 활용한 데 대한 인도의 제소 이후, 2021년 말 기준 제로잉 관련 분쟁은 총 23건으로 이 중 12건에 대해 상소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제로잉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지속적이고 원칙적인 판단은 제로잉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패널과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원심 및 재심에서 어떤 경우든 제로잉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조영진 2020).⁵⁾

다만 소위 ‘표적덤핑’(targeted dumping)⁶⁾ 상황에서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 제로잉하는 것이 반덤핑협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동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상소기구는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 역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동 상소기구의 판결로 미완의 부분으로 남아있던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 관련 논란도 종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 상소보고서가 표적덤핑의 경우라도 제로잉을 금지하였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덤핑마진 산

부과하는 것이다. WTO 중재 재판부는 2019년 2월 한국 정부가 세탁기 수출 피해액으로 연 8,481만 달러(약 953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 4) 1947년 체결된 GATT의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보완, 개정한 1994년 GATT의 동 협정을 일반적으로 ‘반덤핑협정’이라고 한다.
- 5)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비교방식은 W-W 비교방식(Weighted average to Weighted average comparison methodology: 평균 대 가중평균 비교방식), T-T 비교방식(Transaction to Transaction comparison methodology: 거래 대 거래 비교방식) 및 W-T 비교방식(Weighted average to Transaction comparison methodology: 가중평균 대 거래 비교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6) 특정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고 나머지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 등에서는 덤핑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비패턴거래(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낮지 않은 거래)를 아예 제외(exclusion)하는 것으로 상소기구가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동 방식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제로잉을 금지하더라도 제로잉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채택된 상소보고서의 제로잉 관련 해석과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반덤핑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로잉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⁷⁾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우선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제기된 표적덤핑 시 제로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상소기구 판결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3장에서는 상소기구가 제시된 제로잉 금지 및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그 의미를 평가한다. 4장에서는 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제로잉 관련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7)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베트남의 수출시장이다. 2021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963억 달러(전체 수출의 28.6%),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810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중국,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이는 향후 베트남에 대한 반덤핑, 셰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조치의 발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한다.

II. 한-미 세탁기 분쟁(DS464) 상소보고서에서 제시한 덤핑마진 기법 분석⁸⁾

1. 상소기구 판결 분석⁹⁾

상소기구는 그동안 일관되게 W-W, T-T 및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 제로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하였다. 한-미 US-Washers 분쟁에서는 표적덤핑의 경우에도 제로잉을 금지하여 기존 분쟁의 대상이 된 모든 형태의 제로잉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표적덤핑의 경우 W-W, T-T 비교방식이 아닌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 시 필요한 조건을 강화하였다. 패널은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에 따른 가격차이에 패턴이 존재하는지, 또한 그 가격차이가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격차이의 이유나 목적에 대한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만으로 반덤핑협정 제2.4(b)조¹⁰⁾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반하

8)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1심인 패널 및 2심이자 최종심인 상소절차로 진행된다. 상소기구의 판결이 최종판결이라는 점에서 본 장에서는 패널의 판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외한다.

9)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의 내용은 각각 아래 URL 참조.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464R.pdf&Open=True>,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464ABR.pdf&Open=True>.

또한, 패널판결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WTO 한미 세탁기 분쟁(US-Washers)에 대한 고찰: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을 중심으로.”(조영진, 2017) 참조.

10) 제4항의 공정비교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마진의 존재를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 당국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평균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에 기초하

여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가격차이의 원인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동 패턴의 여부를 정량평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패널은 제2.4(b)조 제2문 제3절과 관련하여서는 W-W 또는 T-T 비교방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설명하면 된다고 보았다.¹¹⁾ 이에 반해 상소기구는 W-T 비교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식인 W-W 및 T-T 비교방식이 모두 적절하지 않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W-T 비교방식 대신 W-W 및 T-T 비교방식을 사용하도록 조사당국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였다.

또한, 패널은 표적덤핑에 대한 W-T 비교방식의 경우에도 패턴거래의 덤핑 증거들을 고려, 모든 덤핑마진을 합산, 최종 덤핑마진을 산정할 것과 음(-)의 덤핑마진에 대한 제로잉은 안 된다고 판정하였다. 실제 동 분쟁에서 주요 쟁점은 DPM 분석법¹²⁾의 ‘체계적 무시’(이하 systemic disregarding)¹³⁾이었다. 미국은 표적이 되는 패턴거래

여 결정된 정상가격이 개별 수출거래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 11) 위 반덤핑협정 제2.4(b)조 제2문은 세 절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당국이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 수출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패턴을 확인하고(제2절: pattern clause), W-W 또는 T-T 비교방식을 통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없음을 설명하면(제3절: explanation clause)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제1절: methodology clause).
- 12) DPM 분석법(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은 현재 운용 중인 방식으로 소위 가격차이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3월 4일부터 적용된 동 분석법은 모든 반덤핑조사 원심과 재심에서 덤핑조사 청원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상무부가 표적덤핑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격의 차이를 Cohen's d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덤핑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은 기존 반덤핑분쟁에서 W-W 비교방식 또는 T-T 비교방식으로는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을 금지한 WTO의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제로잉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인 제2.4(b)조에 규정된 표적덤핑 상황에서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안이었다.
- 13) 이는 패턴거래의 경우 W-T 비교방식으로, 비패턴거래의 경우 W-W 또는 T-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두 가지 비교방식에서 산정한 중간 덤핑마진을 합산, 최종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W-W 또는 T-T 비교방식에서 나온 음(-)의 덤핑마

의 덤핑마진을 비패턴거래의 덤핑마진과 합산하는 과정에서 표적덤핑이 은폐되지 않기 위해서 systemic disregarding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systemic disregarding이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제로잉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덤핑마진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음(-)의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로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2.4(b)조의 해석에 있어 표적덤핑의 경우 패턴거래에 대해서는 W-T 비교방식으로, 비패턴거래에 대해서는 W-W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덤핑마진을 제로잉하는 것은 제 2.4(b)조 제2문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systemic disregarding에 대해서 패널과는 달리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원칙적으로는 조사대상 상품 전체에 대하여 W-W, 또는 T-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해야 하지만 표적덤핑의 경우는 제2.4(b)조에 따라 그 조사범위를 패턴거래로 제한, W-T 비교방식으로 덤핑의 존재를 확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2.4(b)조 제2문은 패턴거래에 제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 최종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패널의 판결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상소기구의 판결은 기존 상소기구의 법리와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패널 해석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제로잉 관련 WTO 분쟁해결기구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이에 더해 새로운 덤핑마진 산정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소지를 제공하게 되었다. 다음 2절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진을 제로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상소보고서의 제로잉 관련 덤핑마진 산정 기법 분석

우선 상소보고서에서 제시한 새로운 덤핑마진 산정 기법을 살펴보자. 동 분쟁에서 제로잉과 관련한 상소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소기구는 제2.4(b)조의 두 번째 문장에 대해 조사당국이 “다양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에 따라 크게 다른 수출가격 패턴을 구성하는 거래”의 경우 “비패턴거래”를 제외하고 동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의 전체 수출의 매출로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에는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DPM에 따른 미국의 “체계적 무시” 사용이 제2.4조 및 제2.4(b)조의 두 번째 문장과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것을 한국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패널 판결과 관련하여서는 제2.4(b)조의 두 번째 문장은 비교방법론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즉, “패턴거래”의 경우 W-T 및 “비패턴거래”의 경우 W-W 또는 T-T). 또한, 조사당국이 W-T 비교방법론에 따라 “패턴” 내 거래와 W-W 또는 T-T에 따라 “패턴” 외부 거래에 대해 별도의 비교를 수행하는 “체계적 무시”, 비교방법론을 적용한 다음 전체 부정적인 비교 결과를 산출할 때 후자를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소기구는 W-T 비교방법론에 따라 덤핑마진을 설정할 때 “비패턴거래”를 제외하는 것이 제2.4조의 “공정한 비교” 요건과 일치한다고 결정한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소기구는 “체계적 무시”에 관한 패널 판결을 무효화한다.(지자 번역)¹⁴⁾

14) 상소보고서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4.2 allows an investigating authority to establish margins of dumping by applying the W-T comparison methodology only to transactions that constitute the “pattern of export prices which differ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purchasers, regions or time periods” to the EXCLUSION of “non-pattern transactions” and by dividing the resulting amount by all the export sales of a given exporter or foreign producer. Nevertheless, with respect to the Panel’s finding that Korea had failed to establish that the United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상소기구는 덤핑마진 산정 시 패턴거래(수출가격이 현저히 낮은 거래)와 비패턴거래(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낮지 않은 거래)로 구분하여 패턴거래는 W-T 비교방식으로, 비패턴거래는 W-W 또는 T-T 거래방식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은 협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패턴거래의 W-T 비교방식에서도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은 협정위반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제로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소기구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상소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로잉을 금지하는 동시에 표적덤핑의 경우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식은 표적덤핑의 경우 비패턴거래를 제외한 채 패턴거래에서의 덤핑마진만을 인정, 이를 비패턴거래를 포함하는 전체 수출금액으로 나누어 덤핑마진을 구하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다면 반덤핑협정 제2.4(b)조 제2문에 부합하는 덤핑마진 산정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낮지 않은 비패턴거래는 덤핑마진 산정 시 아예 제외(exclusion)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패턴거래

States' use of "systemic disregarding" under the DPM is inconsistent "as such" with Article 2.4 and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4.2, the Appellate Body considered that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4.2 neither permits the combining of comparison methodologies (i.e. W-T for "pattern transactions" and W-W or T-T for "non-pattern transactions"); nor does it allow "systemic disregarding", whereby an investigating authority conducts separate comparisons for transactions within the "pattern", under the W-T comparison methodology, and for transactions outside the "pattern", under the W-W or T-T comparison methodology, and then disregards the latter when they yield an overall negative comparison result. The Appellate Body also considered that the EXCLUSION of "non-pattern transactions" in establishing margins of dumping under the W-T comparison methodology is consistent with the "fair comparison" requirement in Article 2.4. In light of the above, the Appellate Body declared moot the Panel's findings in respect of "systemic disregarding".

제외방식은 형식적으로는 제로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제로잉과 동등한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조사당국이 덤핑마진 산정 시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로 구분하게 되면 당연히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거래는 패턴거래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거래(다시 말해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문제가 될 정도로 낮지 않은 거래이거나 더 나아가 수출가격이 오히려 정상가격에 비해 높은 거래도 포함)는 비패턴거래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오히려 정상가격에 비해 높은 거래의 경우 덤핑마진이 (-)가 되고 이를 0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비패턴거래를 덤핑마진 산정 시 아예 제외해 버리게 되면 이러한 부의 덤핑마진이 0으로 간주되는 것 자체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비패턴거래에서 덤핑마진이 양(+)이 되는 거래가 음(-)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크지 않은 한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은 명목상 제로잉이 금지되더라도 실제로는 제로잉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비록 제로잉이 금지되더라도 어차피 패턴거래는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덤핑마진은 (+)가 되지 (-)가 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제로잉의 효과는 제로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상소기구도 제로잉을 금지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갖는 ‘비패턴거래 제외’(EXCLUSION of non-pattern transactions)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제로잉을 금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하는 동시에 제로잉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Ⅲ. 제로잉 관련 시뮬레이션 및 평가

1. 제로잉 관련 시뮬레이션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수출거래를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로 분류하고 제로잉의 경우에도 허용과 금지로 나누면 아래와 같이 6개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각 반덤핑 산정방식에 대해 3가지의 단순화된 사례별로 나누어서 시뮬레이션해보면 아래 <표1>, <표3>, <표5> 및 그 각각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해당하는 <표2>, <표4>, <표6>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무역거래에 따른 총 수출액은 \$1,000으로 가정한다.

- ①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허용
- ②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 + 비패턴거래 제로잉 허용
- ③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허용 + 비패턴거래 제로잉 금지
- ④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금지
- ⑤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허용(비패턴거래 제외)
-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비패턴거래 제외)

<표1> 덤핑마진 산출(사례 1)

	패턴거래	비패턴거래
거래A	+\$100	+\$100
거래B	-\$100	-\$100

<표2> 덤핑마진율 시뮬레이션 결과(사례 I)

	패턴거래 A	패턴거래 B	비패턴거래 A	비패턴거래 B	덤핑마진합계	덤핑마진율
①	100	0	100	0	200	20%
②	100	-100	100	0	100	10%
③	100	0	100	-100	100	10%
④	100	-100	0	0	0	0%
⑤	100	0	-	-	100	10%
⑥	100	-100	-	-	0	0%

덤핑마진 산정 시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덤핑마진율을 가능한 높게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우선, <표1>에서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에서 발생하는 덤핑마진은 동일하다. 또한, <표2>에서 <표1>의 거래를 바탕으로 산출된 덤핑마진율을 보면 6가지 방식 중 ①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적용 방식을 적용하면 덤핑마진율이 20%로 가장 높게 책정되므로 수입국은 ① 방식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②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 + 비패턴거래 제로잉 허용 방식, ③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허용 + 비패턴거래 제로잉 금지 방식, ⑤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허용(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은 모두 10%로 ②, ③, ⑤는 무차별하다. 그리고 ④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금지 방식과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은 덤핑마진율이 0%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표3> 덤핑마진 산출(사례 II)

	패턴거래	비패턴거래
거래A	+\$200	+\$100
거래B	-\$20	-\$100

<표4> 덤핑마진율 시뮬레이션 결과(사례 II)

	패턴거래 A	패턴거래 B	비패턴거래 A	비패턴거래 B	덤핑마진 합계	덤핑마진율
①	200	0	100	0	300	30%
②	200	-20	100	0	280	28%
③	200	0	100	-100	200	20%
④	200	-20	100	-100	180	18%
⑤	200	0	-	-	200	20%
⑥	200	-20	-	-	180	18%

다음으로 <표3>에서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에서 발생하는 덤핑마진율을 보면 <표1>에 비해 패턴거래의 덤핑마진이 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표4>에서 산출된 덤핑마진율을 보면 6가지 방식 중 ①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적용 방식을 적용하면 덤핑마진율이 30%로 가장 높게 책정되므로 수입국은 ① 방식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②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 + 비패턴거래 제로잉 허용 방식이 28%로 두 번째로 높다. 그리고 ③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허용 + 비패턴거래 제로잉 금지 방식, ⑤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허용(비패턴거래 제외) 방식 모두 20%로 ③, ⑤는 무차별하다. 마지막으로 ④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금지 방식과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은 덤핑마진율이 18%로 가장 낮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소기구가 제시한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의 덤핑마진율이 18%로 ①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적용 방식의 덤핑마진율 30%와의 차이가 앞의 <표2> 30%p에 비해 12%p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비패턴거래의 덤핑마진율은 변화 없는 상황에서 패턴거래의 (+) 덤핑마진율이 높아질수록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의 덤핑마진율과 ①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적용 방식의 덤핑마진율과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덤핑마진 산출(사례 III)

	패턴거래	비패턴거래
거래A	+\$200	+\$20
거래B	-\$20	-\$200

<표6> 덤핑마진율 시뮬레이션 결과(사례 III)

	패턴거래 A	패턴거래 B	비패턴거래 A	비패턴거래 B	덤핑마진 합계	덤핑마진율
①	200	0	20	0	220	22%
②	200	-20	20	0	200	20%
③	200	0	20	-200	20	2%
④	200	-20	20	-200	0	0%
⑤	200	0	-	-	200	20%
⑥	200	-20	-	-	180	18%

마지막으로 <표5>에서 패턴거래에서 발생하는 덤핑마진이 비패턴거래에서 발생하는 덤핑마진에 비해 <표1>과 <표3>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에서 산출된 덤핑마진율을 보면 6가지 방식 중 ①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적용 방식을 적용하면 덤핑마진율이 22%로 가장 높게 책정되므로 수입국은

① 방식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②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 + 비패턴거래 제로잉 허용 방식, ⑤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허용(비패턴거래 제외) 방식 둘 다 20%로 ②, ⑤는 무차별하다. 그리고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은 덤핑마진율이 18%로 ②, ⑤의 20%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③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허용 + 비패턴거래 제로잉 금지 방식 및 ④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금지 방식의 덤핑마진율은 각각 2%, 0%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¹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턴거래의 덤핑마진이 크고 비패턴거래의 덤핑마진이 작을수록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은 가장 큰 덤핑마진율의 산출이 가능한 ①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허용 방식의 덤핑마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비패턴거래를 제외하지 않고 덤핑마진율을 산정하는 방식인 ④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금지 방식의 경우에 비해 오히려 덤핑마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적덤핑을 의미하는 패턴거래만을 대상으로 덤핑마진율을 산출하고 대신 제로잉을 금지하는 상소보고서의 제안은 표적덤핑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무게를 두는 경우 수입국에게 불리한 방식만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소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만일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이 WT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덤핑마진율 산출방식이 된다면 수입국과 수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표적덤핑으로 의심될 만한

15)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마진율이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거래가 다수인 동시에 비패턴거래에서 부(-)의 덤핑마진이 큰 거래가 많을 경우 비패턴거래를 제외하고 패턴거래만을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산출하는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이 방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를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는 정교한 덤핑마진 산출 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만이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로 나누어 덤핑마진을 산출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어 이러한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은 미국에게 제로잉을 대신할 새로운 방식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2. 비패턴거래 제외방식 평가

제로잉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복수의 수출거래가 필요하고, 복수의 수출거래를 묶지 않고(즉 평균하지 않고) 개별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수출거래를 개별로 두는 산정방식으로 틀을 바꾸어야 소위 제로잉은 효과를 낸다. 그래서 제2.4(b)조의 제2문이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 간의 비대칭적 비교를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칭비교는 다분히 표적덤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적덤핑은 특정의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을 표적으로 하여, 저가수출(덤핑)하고 비특정의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에는 덤핑하지 않는 경우(산수로 말하면 ‘음’(-)의 덤핑마진이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비대칭비교의 경우에도 제로잉이 금지되게 되면 표적덤핑에 대한 적절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위에서 상소기구가 제시한 ⑥번 방식인 제로잉 금지와 더불어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소기구의 제로잉 관련 새로운 덤핑마진 산출 기법의 제시로 인해 미국 이외 국가도 비패턴거래 제외방식 적용을 통해 덤핑마진의 인위적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조사당국은 WTO의 판결에 따르기 위해 제로잉의 사용을 금기시켰다. 이것이 WTO에서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로잉 이슈가 나온 이래로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반덤핑판결 조사에서는 덤핑마진 산정은 대칭비교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상소보고서의 비패턴거래 제외방식 제시를 통해서 미국 이외의 다른 회원국들도 요건만 맞으면 비대칭비교를 쓸 수 있고 비대칭비교를 통해서 나온 덤핑마진은 동일한 조건의 대칭비교(W-W) 하의 덤핑마진에 비해서 커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DPM 방식에 있어서 패널과 상소기구 모두 현재의 방식은 WTO 협정을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현재의 DPM 방식을 수정 또는 개정하여 이러한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여 표적덤핑에 대한 분석을 시행할 경우, 위의 비패턴방식 제외방식이 실제로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표적덤핑에 대한 덤핑마진을 산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만 아니라 실제로 표적덤핑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나라에게도 유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입국은 동 방식을 채택,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소기구가 제시한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은 제로잉을 금지하는 동시에 표적덤핑을 걸러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교육지책으로 평가된다. 물론 표적덤핑을 어떻게 구별해낼지에 대한 계량화된 그리고 일반화된 모형이 아직 없다는 점, 설명의 무에 대해서 회원국 간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상소기구의 판결로 반덤핑협정 제2.4(b)조 제2문 전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적덤핑을 구분하기 위한 표준모델은 큰 논란의 여지없이 논의되고 제시될 수 있게 되었다.

IV. 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분석 및 시사점

위에서 한-미 세탁기 분쟁을 중심으로 제로잉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결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주요 대미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이 반덤핑분쟁 특히 제로잉 관련 분쟁에서 위 내용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한 제소사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2006년 뒤늦게 WTO에 가입하였다. 베트남은 WTO 분쟁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거의 없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베트남산 수입냉동새우에 대한 반덤핑관세에 대해 두 번 제소하여(2010년(DS404)¹⁶⁾, 2012년(DS429)¹⁷⁾ 실질적으로 승소하였다. 이후 동 반덤핑분쟁과 거의 유사한 사례로서 2018년 이후 베트남산 냉동생선살(fish fillet)에 대한 반덤핑분쟁(DS536)¹⁸⁾도 진행 중인데 2020년 초 패널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패널보고서의 회람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 분쟁에서도 베트남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제로잉 관련 베트남의 대응과 관련한 적절한 사례일 것이다.

미국과 베트남 간 냉동새우 및 냉동생선살 반덤핑 관련 WTO 분쟁 그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하나는 베트남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문제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제로잉에 대한 이슈라고 할

1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04_e.htm 참조.

17)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29_e.htm 참조.

18)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6_e.htm 참조.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WTO의 제로잉 금지의 원칙을 거부하고 여전히 제로잉을 반덤핑관세율 산정에 활용하고 있고 이는 베트남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베트남 냉동새우 분쟁은 미국이 2009년 베트남産 냉동새우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하면서 촉발되었다. 미국으로의 새우수출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으로서는 미국의 반덤핑관세로 인한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베트남은 이미 이전부터 미국의 반덤핑조치, 특히 제로잉에 대해 반발해 왔다. 2006년 WTO에 가입한 베트남은 다자적 차원의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미국이 베트남産 새우수입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 결정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횡포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동 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8년 시작된 냉동생선살 반덤핑분쟁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⁹⁾

세부적으로 동 냉동새우 분쟁에서 제로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패널 및 상소기구는 미국이 반덤핑관세율의 산정 시 제로잉 방식을 적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²⁰⁾ 패널은 덤핑마진을 산정 시 동일 품목이라도 덤핑 판정 품목의 평균치만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반덤핑협정의 비교 가능한 모든 상품 가격의 평균을 채택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패널은 미국은 반덤핑협정의 취지에 맞게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의 냉동생선살 분쟁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반

19) 분쟁 개요는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6_e.htm 참조

20) 패널보고서는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429R.pdf&Open=True> 참조.

상소보고서는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429ABR.pdf&Open=True> 참조.

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상소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일 품목의 경우라도 덤핑 관정 품목의 평균치만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WTO에서의 제로잉에 대한 판결이 베트남에 유리하게 내려졌다 하더라도 미국이 향후 위에서 논의한 비패턴거래에 대한 제외 및 패턴거래에 대한 제로잉 금지 방식(위에서 논의한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을 반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는 베트남에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베트남의 경우가 위에서 예시로 제시했던 세 가지의 사례 중 만약 세 번째 사례로 제시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면, 다시 말해 패턴거래의 덤핑마진은 크고 이에 비해 비패턴거래의 덤핑마진이 작을수록 ⑥ 패턴거래 + 패턴거래 제로잉 금지 (비패턴거래 제외) 방식은 가장 큰 덤핑마진율의 산출이 가능한 ①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허용 방식의 덤핑마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비패턴거래를 제외하지 않고 덤핑마진율을 산정하는 방식인 ④ 패턴거래 + 비패턴거래 + 두 거래 모두 제로잉 금지 방식의 경우에 비해 오히려 덤핑마진율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적덤핑을 의미하는 패턴거래만을 대상으로 덤핑마진율을 산출하고 대신 제로잉을 금지하는 상소보고서의 제안은 표적덤핑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무게를 두는 경우 미국 같은 수입국에게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는 반면 베트남과 같은 수출국에게는 불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베트남의 대미 수출의 경우 패턴거래 및 비패턴거래의 비중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덤핑마진율의 크기가 얼마

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패턴거래 제외 및 패턴거래에 대해서만 제로잉을 금지한 채 반덤핑관세율 산정, 부과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제로잉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수출상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미국이 언제든지 자국에 유리하게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베트남은 대미 수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로잉 금지라는 WTO의 판결을 근거로 미국의 제로잉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을 통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러한 제로잉 금지의 효과는 실제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율 산정 시 기존 방식 대신 상소기구가 제시한 비패턴방식 제외방식을 채택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베트남은 표적덤핑이 적용될 수 있는 패턴거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적덤핑은 특정의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을 표적으로 하여, 정상가격에 비해 저가수출(덤핑)하고 비특정의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에는 덤핑하지 않는 경우(‘음’(-)의 덤핑마진이 나오는 경우를 포함)가 해당된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수출 관련 기업들이 수출 시 표적덤핑에 해당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미국의 표적덤핑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은 냉동새우 관련 동일한 제조사(반덤핑협정 위반)에 대해 연이어 두 번의 제조사를 제기하였고 결국 승소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2018년 냉동생선살 수출 관련 반덤핑분쟁에도 이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최대한 WTO 분쟁해결의 이점을 활용하

여 미국의 제로잉을 비롯한 반덤핑 부과에 대한 법리적 다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은 제로잉이 이미 WTO에서 지속적으로 협정 위반으로 판결되어 왔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분쟁을 제소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제로잉 분야의 승소 가능성이 크고 그 승소의 이익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그동안 제로잉 관련 반덤핑분쟁사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제기될 분쟁 이슈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제로잉 이슈는 중국, 인도 등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주요 신흥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이들 주요 신흥국들의 참여는 WTO 분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역내 아세안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및 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패널 및 상소 절차의 진행 및 판결에 베트남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속해 있는 아세안은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키는 등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생산 공정의 분업화가 진전되어 역내가치사슬이 정교하고 공고하게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나희량 2019, 2016; 김윤화·나희량 2017). 따라서 WTO 분쟁의 경우에도 그 판결의 내용이 분쟁당사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이라는 지역단위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나희량 2018).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미국-베트남 냉동새우 분쟁의 경우 새우, 생선 등의 1차 식품상품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통상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정보 및 분쟁 노하우의 공유, 공동연구 등과 같은 공조 및 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WTO 상소기구는 미국 DPM 방식의 제로잉을 활용한 덤핑마진 산출방식은 WTO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제기된 표적덤핑 제로잉 방식 문제에 대해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제로잉을 금지하는 동시에 수입국에게는 제로잉을 하지 않더라도 제로잉을 했을 때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시 말해 제로잉을 금지하는 동시에 표적덤핑을 걸러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비대칭비교(W-T)는 다분히 표적덤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적덤핑은 특정의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을 표적으로 하여, 저가수출(덤핑)하고 비특정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에는 덤핑하지 않는 경우(산수로 말하면 ‘음’(-)의 덤핑마진이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비대칭비교의 경우에도 제로잉이 금지되게 되면 표적덤핑에 대한 적절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상소기구가 제시한 제로잉 금지와 더불어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이외 국가의 비패턴거래 제외방식 적용으로 덤핑마진의 인위적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조사당국은 제로잉의 사용을 금기시켰다. 이것이 WTO에서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로잉 이슈가 나온 이래로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반덤핑관세 조사에서는 덤핑마진 산정은 대칭비교에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상소보고서의 비패턴거래 제외방식 제시를 통해서 모든 회원국은 요건만 맞으면 비대칭비교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비대칭비교를 통해서 나온 덤핑마진은 동일한 조건의 대칭비교(W-W)하의 덤핑마진에 비해서 커지게 된다.

미국이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도입하여 현재의 DPM 방식에서 제로잉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 표적덤핑에 대한 반덤핑 분석을 시행할 경우 이러한 비패턴방식 제외방식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표적덤핑에 대한 덤핑마진을 산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는 주요 수입국인 미국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주요 수출국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표적덤핑을 어떻게 구별해낼지에 대한 계량화된 그리고 일반화된 모형이 아직 없다는 점, 설명의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상소기구의 판단으로 반덤핑협정 제2.4(b)조 제2문 전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적덤핑을 구분하기 위한 표준 모델은 조만간 논의되고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에 있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¹⁾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베트남은 기존 미국과의 냉동새우 분쟁, 냉동생선살 분쟁 등의 경험을 활용하여 미국 반덤핑 산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패턴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덤핑분쟁과 관련된 역내외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 및 공조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방안이 필요

21) 물론 이는 베트남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미 수출비중이 높고, 특히 흑자규모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는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주제 및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미국-베트남 냉동새우 분쟁에서 제로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향후 비패턴 거래의 제외방식에 따른 미국의 제로잉 방침의 변화 가능성 및 그 형태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DPM 방식 외에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의 분류 및 비패턴거래 제외 덤핑마진을 산출방식 등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면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윤화·나희량. 2017. “인도네시아 WTO 분쟁 연구: 통상정책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3): 29-55.
- 나수엽. 2010. “중·미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 『지역경제 포커스』 4(17).
- 나희량. 2019.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 연구: 비관세조치 및 특정무역현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4(3): 43-72.
- 나희량. 2018.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나희량. 2016.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6(4): 119-177.
- 김상만. 2015.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124: 9-33.
- 성재호·이길원. 2006. “반덤핑마진 산정시 ‘zeroing’ 관행의 검토: 미국의 덤핑마진산정에 대한 법, 규제와 방법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4: 37-66.
- 이길원. 2007. “WTO 덤핑마진에서 ‘Zeroing’ 관행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4: 73-76.
- 조영진. 2020.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표적덤핑과 ‘패턴’에 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65(2): 325-349.
- 조영진. 2017. “WTO 한·미 세탁기 분쟁(US-Washers)에 대한 고찰: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15(1): 57-88.
- 조영진. 2009. “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사례 연구: 제로잉(zeroing)을 중심

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관련 시사점: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중심으로 197

으로.” 『통상법률』 89: 123-169.

반덤핑분쟁 관련 URL

한-미 세탁기 분쟁(DS464)

개요: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64_e.htm

패널보고서: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464R.pdf&Open=True>

상소보고서: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464ABR.pdf&Open=True>

미국-베트남 냉동새우 분쟁(DS404)

개요: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04_e.htm

패널보고서: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404R-01.pdf&Open=True>

미국-베트남 냉동새우 분쟁(DS429)

개요: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29_e.htm

패널보고서: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429R.pdf&Open=True>

198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상소보고서: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429ABR.pdf&Open=True>

미국-베트남 냉동생선살 분쟁(DS536)

개요: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6_e.htm

(2022.03.19. 투고, 2022.04.14. 심사, 2022.05.10. 게재확정)

<Abstract>

Implications for the US-Vietnam Anti-Dumping Dispute: Focusing on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Heeryang R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zeroing, which considers a negative dumping margin to be zero, has long been the issue of WTO disputes. Regarding the washing machine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December 2013, in September 2016, the Appellate Body judged that the zeroing controversy was settled through a ruling that clarified the prohibition of zeroing in all methods of symmetric and asymmetric comparisons when calculating anti-dumping. However, in the rulings, the non-pattern transactions could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anti-dumping, leaving room for another issue. It is not yet possible to predict whether the US will officially abandon the zeroing method and switch to a method that excludes non-pattern transactions. However, even if zeroing is not applied, if non-pattern transactions are excluded, in some cases, an anti-dumping effect similar to zeroing can be achieved, which is expected to be a new policy issue for exporting countries to the U.S. We analyze and evaluate the contents of the zeroing decisions and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of the Appellate Body. In addition, focusing

200 동남아시아연구 32권 2호

on the case of Vietnam, where anti-dumping disputes with the U.S. are increasing recently,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ase that the U.S. introduces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instead of zeroing.

Key Words: US-Vietnam anti-dumping dispute, zeroing, appellate body, non-pattern trading exclusion method